

차별 개선 사례

2025년

A사(공공기관,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례)

기간제 노동자 대상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 지원

-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지급 개선
- 기간 한정 사업,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적 수요에만 기간제 노동자 고용으로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개선 효과

▶▶ 기간제 노동자 9명 임금 상승, 연간 임금상승 총액 4,050,000원

2024년

B사(중소기업, 금융업)

무기직, 기간제 노동자 대상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 및 휴가 지원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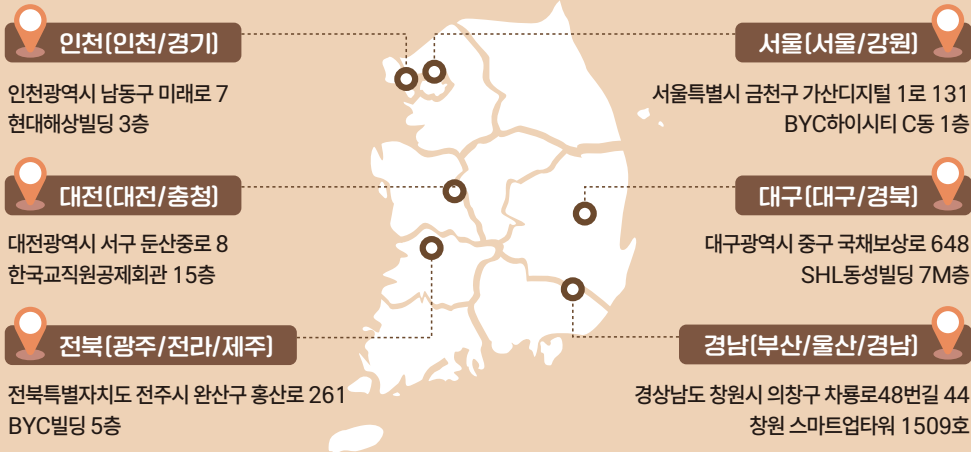
-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기개발비, 창립기념일 축하금, 교육지원비, 자녀학자금 및 인정휴가 적용

개선 효과

▶▶ 무기직 29명, 기간제 16명 임금 상승, 연간 임금상승 총액 무기직 5,800,000원, 기간제 3,200,000원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

[전국 6개소]



함께 만드는 평등일터 함께 누리는 행복일상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2089**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개선을 위해
'차별개선센터'가 함께합니다.

차별개선센터는?

차별개선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고용차별 개선문화 확산을 지원합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등에 비하여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 월급은 절반이에요.”

“복지 혜택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대요.”

▶▶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주요 지원사업

◆ 진단 및 개선권고

-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차별 요소 진단 및 개선 지원
-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이행 지원 ▶ 개선권고안, 제규정 정비 지원, 컨설팅 연계 등

1 방문 진단	2 개선 권고	3 개선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노무자료 검토 • 인사담당자 등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사항 권고 • 개선이행 지원 - 교육, 상담, 사업 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 결과 및 이행 계획 관리 (당해연도~차년도) • 우수사업장 선정 및 사례 확산

◆ 교육

- 고용차별 인식 개선 및 차별없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방문·집체·온라인 교육 제공

온라인 학습실 <https://nosaedu.kacnet.co.kr>



- ▶ 필수과정
 - ① 직장내 갈등(고용차별+괴롭힘) 예방 교육 +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요약)
- ▶ 선택과정
 - ②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이해
 - ③ 근로계약서의 A to Z
 - ④ 통상임금/최신 개정법/최신 판례
 - ⑤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 ⑥ 성차별 예방
 - ⑦ 기초 노동법
- ▶ 법정교육
 - ① 직장내 괴롭힘 예방
 -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
 - ③ 장애인 인식 개선
 - ④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 ⑤ 산업안전보건

◆ 상담

- 임금, 근로조건, 기타 복리후생 등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상담 제공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